

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 관리지침

1. 지원 목적

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, 창의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여, 건양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케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기본방침

가. 탁월성과 기회균등의 두 원칙에 기준하여 지원한다.

나.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한다.

다. 연구비 지원정책, 방식 및 운영에 있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살린다.

라.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그 합리성을 견지한다.

마.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연구지원의 목적을 달성한다.

3. 지원 내용

가. 지원 분야: 전 의과학 분야의 교수 자유 과제

나. 지원 과제 형태 : 논문

다. 지원 형태:

(1) 개인 및 공동연구: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.

(2) 삭제(2016.08.11)

4. 지원액 및 연구비 산정기준

연구비 지원액은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.

가. 개인 및 공동연구 : 1,000만원 및 2,000만원 이하

나.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5. 연구기간

논문 연구 : 1년 (당해년 9월 1일부터)

6. 신청자격

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.

7. 신청자격의 제한

다음의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.

가.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(연구년에 따른 연구출장은 예외)을 계획하고 있거나,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.

나. 과거에 본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한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. (단, 연구결과 완결은 의과학 연구소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함을 말한다.)

다. 지원신청서 상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 란에 기입한 정보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.

라. 본 신청 과제가 지원신청서 상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 란에 기입된 기수행 연구와 동일한 경우.

마. 과거에 본 연구비를 지원받고 이후 연구비를 반납한 경우.(해당 년차 다음해부터 2년간 제한)
(2020.08.06)

8. 연구진의 구성

가. 연구책임자 :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(2020.06.11)

나. 삭제(2016.08.11)

다. 연구보조원 :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, 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생, 학부생 및 연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.

9. 신청절차

가. 신청서 제출 : 연구책임자는 소정의 연구비지원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명곡의과학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.

나. 신청 마감 : 7월 둘째 금요일

10. 연구지원과제의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

가. 심사기준

- (1)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
- (2)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탁월성
- (3)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
- (4)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
- (5)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
- (6) 연구비 신청자격 요건연구비 여부
- (7) 지난 2년간 교외연구비 신청실적
- (8) 기타

나. 선정 절차

- (1) 심사위원은 명곡의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(2)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. 선정되는 연구과제의 수는 학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전체가 균형있게 학문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.
- (3) 공동연구 과제가 가능한 한 연구비 총액의 40% 이하로 선정되도록 고려하나, 연구의 내용과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.
- (4) 신입교원의 연구환경 제고를 위해 연구비를 수혜한 적이 없는 연구자가 지원할 경우, 교수-학부학생의 연구 환경 장려하기 위해 교수-학부학생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할 경우, 임상-기초 교수의 연구 환경 장려 및 공동책임부여를 위해 임상-기초 공동연구로 과제를 지원할 경우, 심사점수 총점의 5%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.
(신입교원: 임용 3년 이내 혹은 명곡학술연구과제를 수혜한 적이 없는 교원)
- (5)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, 교수로서의 근무연수가 짧거나 혹은 명곡학술연구비의 수혜 회수가 적은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
- (6) 연구비 수혜 3년 이내 수혜자가 지원 할 경우 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. 단, 연구비 수혜시점은 연구개시일로 한다. (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)

11. 과제의 시작

가. 과제선정통지 : 선정된 연구과제는 8월말 경에 의과대학 전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

나.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선정 후 한달 내에 연구비 사용과 과제 추진 시 주의점에 관한 1회의 교육을 실시하고, 이하 서류들을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.

별지#1) 협약서 (한 달 내 서명하여 제출)

별지#2) 서약서 (한 달 내 서명하여 제출)

별지#3) 연구원 참여계약서 (참여 해당월 내 제출)

별지#4) 명곡학술연구비 관리지침

별지#5) 연구비 사용 기준 및 안내문: 연구비 관련 안내 / 실행예산산정 기준표 / 건양대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용방법 /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/ 연구비 정산 안내

별지#6) 집행 서식: 표지 / 정산서 / 사용내역서 / 입금의뢰서 / 영수증 첨부철 / 인건비 영수증 / 연구활동비 영수증 / 예산변경신청서 / 회의결과보고서

* 연구비 예산 변경관련: 최초 예산(지원신청서 상의 예산)에 근거하여 예산변경신청서 작성하는 경우

: 인건비 증액을 제외한 연구비 예산변경시 소장의 허가를 받는다.

- 최초 예산에서 미책정 비목에 대한 예산 책정

- 인건비 감액 포함 상한 %내에서의 금액 변동시

- 같은 비목내 세부항목의 금액을 정했을 경우 세부항목 간 예산 변경시

* 예산변경시 예산변경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는다.

* 학회 연회비는 연구비 예산에서 지원될 수 없으며,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별지#7) 출장신청원

- 별지#8) 학회 참석관련 여비 정산 서식
- 별지#9) 교내 여비규정
- 별지#10) 연구계획변경신청서
- 별지#11) 결과보고서 서식
- 별지#12) 결과물(논문) 소속 표기 및 문구 안내문
- 별지#13) 결과물(논문 별쇄본) 제출 안내문
- 별지#14) 연구진행 및 결과물 관련 안내문

12. 과제 수행

가. 연구비 지급 :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매달 소정의 연구비 사용내역서 및 관계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, 익월에 해당 연구비를 지급받는다.

나. 연구 과제의 변경

(1) 변경이 가능한 사항: 연구제목, 연구내용, 연구기간, 연구진, 기타 관련사항에 한하며 연구기간 변경은 기존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장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2회(최장 1년)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연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성과물은 최초 승인된 연구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2018.08.27).

(2) 변경절차: 연구계획변경신청서(별지#10)를 제출하여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.

- * 연구비 예산 변경관련: 최초 예산(지원신청서 상의 예산)에 근거하여 연구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
 - : 관리지침 12조 나항 (1)항 연구진 변경에 의거 (2)의 변경절차로 진행한다
 - 최초 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을 미신청한 경우
 - 최초 예산에서 인건비를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

13. 과제의 종료 및 결과물 제출

가. 결과보고서 작성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양식(별지#11)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논문 별쇄본 제출: 원칙적으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(1) 지원금 1천만원 과제의 경우에는 학진등제지 이상, 2천만원 과제의 경우 SCI(E)급의 제출을 의무화한다.
- (2) 논문이 본 과제에 의한 결과물임을 해당 서식(별지#13)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.
- (3) 연구책임자는 주저자(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)이어야 한다.
- (4) 사사는 “이 논문은 20**년도 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의 (부분적인)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(국문)” 또는 "This work was supported (in part) by Konyang University Myunggok Research Fund of 20** (영문)"으로 표기하며, 이를 포함한 2개까지의 사사를 인정한다. 단, n개의 사사를 갖는 논문의 인정을 위해서는 n-2개의 추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.

다. 특허 대체 가능

- (1) 특허 등록시 명곡의과학연구소 및 명곡학술연구과제 등의 내용을 기입할 경우 가능
 - (2) 저널의 주저자 대체: 출원인으로 하되 배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주저자 판단, 동일비율의 경우도 가능하다.
- 라. 연구 종료 후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은 학교의 재물로 귀속시킨다.

14. 연구비 환수

가.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 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9월 회의에서 연구비의 환수 여부를 이하와 같이 판단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- (1) 전액 환수: 연구책임자의 사망을 제외한 연구의 미흡, 퇴직 등으로 기간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.
- (2) 부분 환수: 사용기준(별지#5)에 위배되어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액만큼의 연구비를 부분 환수한다.

15.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곡의과학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

16. 부 칙

- 이 시행요강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이 시행요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